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99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10월 16일 시장 제출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3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0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특별시장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,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재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(안 제3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식품위생법」
- 2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 20. 7. 23.~8. 12.)결과: 의견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,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재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1)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는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) 제89조1항1)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 제3조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은 1. 「식품위생법」 제82조·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, 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2항2)에서 기금의

1)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2)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<생략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
2. 제82조, 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
3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안임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	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		-----.
1. 법 제82조·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		1. 법 제82조 및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		
2. ~ 4. (생략)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
2) 식품진흥기금

-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은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,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, 식중독 예방, 음식문화개선사업, 교육·홍보, 조사·연구, 식품 안전관리, 시민영양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됨.
- 2020년 9월말 기준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79억 6천 6백만원임

〈표〉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총 조 성 규 모			
합 계	용자금 채권보유액	예치금	재정투용자 기금예탁금
67,966	3,074	4,392	60,500

- 2021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4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이 2억 8천만원 증가하여 11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.

〈표〉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0년(B)	2021년(B)	증감(B-A)	비 고
합 계	6,452,332	10,663,119	4,210,787	
이자수입	90,668	110,357	19,689	
공공예금이자	67,924	85,500	17,576	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
민간용자금회수 이자	22,744	24,857	2,113	용자금 이자
과징금 및 과태료 등	917,006	1,197,378	280,372	
과징금	917,006	1,197,378	280,372	과징금 징수금
기타수입	76,892	52,185	△24,707	
시도비 반환금	76,892	52,185	△24,707	시도비 반환금 수입
용자금 원금 수입	269,991	690,880	420,889	
민간용자금 회수	269,991	690,880	420,889	용자금 원금 회수 수입
예치금 회수	3,682,075	2,171,819	△1,510,256	
예치금 회수	3,682,075	2,171,819	△1,510,256	전년도 이월금
예탁금 및 예수금	1,415,700	6,440,500	5,024,800	
예탁금 원금 회수	0	5,500,000	5,500,000	예탁금 회수금
예탁금 이자	1,415,700	940,500	△475,200	재투예탁금 이자

3 종합의견

-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과징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그 재원의 범위를 관련 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기금의
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,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재원이
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을
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(안 제3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식품위생법」
- 2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0. 7. 23.~8. 12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82조 및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법 제82조·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82조 및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식품정책과 김하랑 (02-2133-4704)